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196회 임시회(2015.05.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상 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년 4월 28일(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월)

4. 관련근거

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나.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5.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된 일부 조항은 삭제하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가.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

나. 점용료 산정 기준 중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일부 조항 삭제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7.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10조, 안 제9조의2 관련 별표2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 중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동일하게 중복 규정되어 있는 허가 대상 시설물 조항은 삭제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점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별표1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음

또한, 안 제3조 관련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도로법 시행령」의 별표3과 동일하게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 시행령과 다르거나 추가적으로 정한 사항만 존치한 바,

이는 「도로법 시행령」에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 규정함으로써 상위법 개정과 조례의 개정일이 달라 적용 시점 차이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